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상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7.

발 의 자 : 김상욱 · 박민규 · 김현정
박정현 · 최혁진 · 박홍배
정준호 · 황운하 · 안도걸
천하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신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1대당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을 한도로 한시적으로 감면하여준 바 있음.

한편, 소상공인과 농어민, 용달·택배·개인화물자동차 등 생계형 화물차주(이하 “소상공인등”이라 함)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,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매연으로 인하여 대기환경이 오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소상공인등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소상공

인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,
나아가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퇴출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
것임(안 제66조의3 신설)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6조의3(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) ①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“노후경유화물차”라 한다)를 2026년 1월 1일 현재 소유(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)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화물자동차[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신조차(新造車)에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“신조차”라 한다]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이 경우 노후경유화물차 1대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 경감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 전액을,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66조의3(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) ①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“노후경유화물차”라 한다)를 2026년 1월 1일 현재 소유(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)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화물자동차[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신조차(新造車)에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“신조차”라 한다]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이 경우 노후경유화물차 1대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

	<u>경감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취득세</u> <u>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</u> <u>에는 산출세액 전액을, 취득세</u> <u>경감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</u> <u>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00만</u> <u>원을 공제한다.</u>
--	--